



2023학년도

학교생활인권규정



선 단 초 등 학 교



차 례

제1장. 총 칙	1
제2장. 교내생활	1
제3장. 교외생활	4
제4장. 정보통신	5
제5장. 학생 생활 지도	6
제6장. 징 계	7
제7장. 용의 복장 규정	16
제8장. 학생자치와 참여의 권리 규정	17
제9장. 학생자치회 규정	19
제10장. 규정의 개정	21
제11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 규정	22
부 칙	27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규정은 선단초등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 인권 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 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 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자치활동, 제18조 학생의 징계 및 학생인권보장,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①항 제4호, 제7호 및 제8호, 제9호 제④항의 학교 규칙기재사항,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및 중학교 학칙 준칙 제27조(징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경기도조례 제4085호),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장 교내 생활

제4조(기본 품행)

1.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 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 학교 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다만,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 교 공동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표현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학습태도)

1. 실내에서는 항상 정숙하며 학습 태도는 항상 바른 수업 분위기를 조성한다.
2. 필요한 교과서와 학용품을 휴대하여 깨끗이 사용하고 분실하지 않도록 한다.
3.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고려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수업 중에 허락 없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며 질의나 발언을 할 때에는 거수하여 교 사의 허가를 얻어서 발표한다.

제6조(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1. 항상 시정표에 유의하여 미리 조용히 수업 준비를 하고 수업 시간을 엄수한다.
2. 복도나 계단에서는 우측통행을 하여야 하며 뛰어다니거나 고성방가하지 않는다.
3. 휴식시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기 반 이외의 교실에 출입하지 않는다.

4. 화장실을 이용 시 질서를 지키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화단 및 잔디밭에 들어가지 않는다.
5. 이동 수업 또는 야외 수업 시에는 교실 관리(잠금 장치, 정리 정돈)를 철저히 해서 분실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등교 후에는 하교시까지 허가 없이 교외로 나갈 수 없다.

제7조(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

제8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여 교우 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9조(이성교제) 교내에서는 이성 간의 예절을 지키고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1. 남녀학생간 서로 존중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2.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3.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전문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0조(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모든 시설물에 파손 또는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2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장애로 인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14조(의사 표현의 자유)

1.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회할 것을 안내한 후 철회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에 관한 권리)

1.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절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입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방과 후나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거나 특별실을 활용하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5.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17조(교내 생활지도의 실제)

1. 순회지도 : 담임 교사 및 전담 교사가 수시로 실내 정숙, 면학 분위기 조성 및 금연·학교 폭력예방 지도
2. 용의검사 :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 및 단정한 학풍 조성
3. 학교 폭력 예방 설문조사 실시 : 학기별 1회 실시
4. 학부모 면담 : 지도 내용의 사안에 따라 학부모와 연계 지도
5. 학생회 활동 전반에 관한 건의사항 및 불편 사항 해결 지도

제 3 장 교외생활

제18조(교외생활 의무)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키는다.
4.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5. 교통규칙을 지키고 공중도덕을 지키며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6.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7.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과 불법 취업을 금한다.
8. 교외에서 타교 교사의 지도를 받았을 때에는 본교 교사에게 대하는 것과 같은 예의를 지키고 순종하여야 한다.

제19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 4 장 정보통신

제20조(사이버예절) 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지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9. 정보통신분야 관련 각종 인터넷윤리에 대한 저촉되는 행위를 한 학생은 학부모와 상담을 실시하고 최대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제21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교사의 동의를 받는다.
2. 등교 후에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하교 시에 전원을 켜다.
3. <삭제>
4. 휴대전화는 스스로 관리하고, 분실 시 책임도 본인이 지도록 한다.
5.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6.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5 장 학생 생활 지도

제22조(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교육법 시행령 제31조(징계 등) 및 중학교 학칙 준칙 제27조(징계)에 의거 징계 사항 및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정하게 처리하여 학생의 사기진작과 교풍을 수립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3조(방침)

1. 학생 생활 지도를 처벌보다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2. 학생의 생활지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3. 생활지도는 평소 개인의 품행을 참작하여 교육적 측면을 중시하여 징계보다는 생활지도 위주로 처리토록 한다.
4.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은 선단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 제11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 규정을 따른다.

제24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의결)

1. 학생들의 생활지도 사항(학생 생활, 학교 폭력 예방, <삭제>, 징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생활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담당 업무자가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 가. 위 원 장: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나. 부위원장: 위원장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다. 위 원: 선도 사항 심의(교무부장, 담당 업무자, 학년 부장, 상담교사, 학교전담경찰관)
 - 라. 기 타: 위원은 아니나 교원 중 간사를 두어 회의록 작성 및 담당 업무자의 업무를 보조한다.
3. 본교 교직원은 필요 시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을 지도하여야 한다.
4. 학생생활교육 위원회는 사안 발생시 생활교육 위원회장의 명으로 소집한다. 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제 6 장 징계

제25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기능 및 임무)

1. 본 위원회는 학생 선도 및 기타 학생 지도 필요시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2.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가.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 나. 학생 징계 해제에 관한 사항
 - 다. <삭제>
 - 라. 기타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제26조(사안 설명 및 심의)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 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27조(기록 및 사무처리)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담당 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28조(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징계는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品行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29조(징계의 심의 및 의결) 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위원회는 학생징계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한다.

제31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사안설명) 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2조(학생생활교육 위원회)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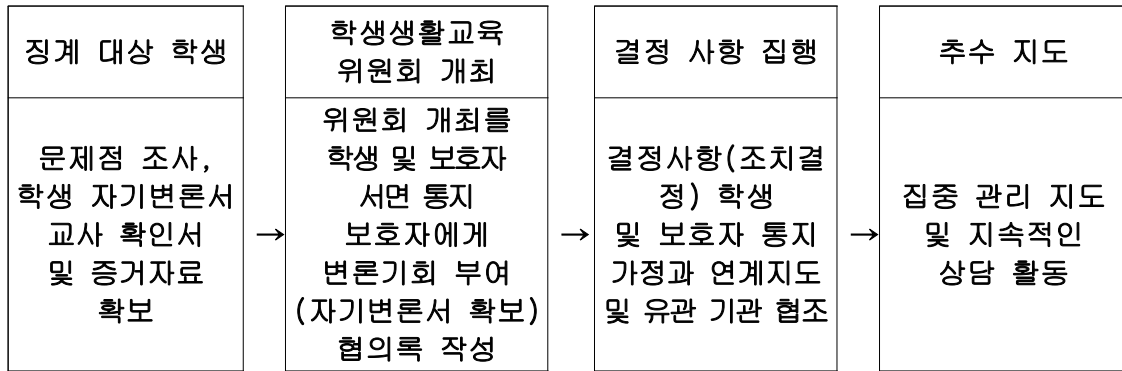
제33조(학교장의 재부심의)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제34조(징계 절차) 사안 발생 시 학생생활인권규정 위반 경중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

은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단 계	내 용
사안 발생 (학교생활인권 규정 위반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조사(문답) 등으로 사실 확인하고 학칙 위반의 경중을 판단 • 가벼울 경우 현장지도 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 • 중대할 경우 안전생활부 교사에게 인계
관찰 면담 (위반 경중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생활부 교사가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정식으로 관찰하고 면담하여 판단 • 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판단 시 유의 사항 : 교육적·인권적 측면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처리 -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
조사 (중대 학칙 위반 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안전생활부에서 정식으로 학생을 조사 • 사안에 대해 학생 자기변론서와 교사 사실 확인서, 목격자 확인서를 받아 검토 • 선도 사안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권리 고지 조사 되는 사안이 위원회의 지도 및 징계 사안이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조사 금지 -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조사하지 않아야 함. - 조사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고의적으로 이를 알려 해당 학생이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해야 함. - 조사 과정에서 가능한 한 2인 이상의 교사 참여 - 한 사안에 여러 학생이 관계되어 있을 경우 사안의 조작 예방을 위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조사를 실시함. - 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수업시간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자기 변론서 작성 시 인권 침해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변론서는 순전히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즉, 교사 혹은 타인의 강요에 의해 자기 변론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자기 변론서 작성 시 반드시 자필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보호자에 의한 작성 혹은 컴퓨터 등을 통한 작성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대상 학생의 서명이 있어야 함.
위원회 회부 여부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의 경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
위원회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생활부 담당 교사는 위원장에게 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보고 •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사안 발생 개요,

	<p>위반 경위 및 정도, 위반 조항, 자기 변론서 및 교사 사실 확인서 등, 기타 학생 관련 참고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결정 • 가급적 학생 및 보호자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함 • 개최 시,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단, 보호자의 동의를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일시, 장소, 개최이유 - 사안 처리 과정, 의견제출 기회,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 - 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됨을 고지
<p style="text-align: center;">위원회 개최 ·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위원 질의 · 응답 • 담임 · 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위원 질의 · 응답 • 학생 · 보호자(법정 대리인 선임 가능) 의견 진술, 위원 질의 · 응답 • 참고 교사, 학생, 보호자 퇴장 •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토대로 선도 여부, 양정 심의 의결(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및 학생 지도 방법 결정 • 학생 징계 조치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인권 친화적, 교육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 학생 징계에 대한 의결이 징벌적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행위와 의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 교육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 학생 징계 조치를 위한 지도 방법에서 학생의 학습권, 양심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는 지도 방법이 의결되어있어서는 안 됨. • 학생 징계 처리 시 유의 사항 : 학생 징계 처리 결과의 공지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해당 학생의 명예권이 침해당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 중 특히 학생의 인권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함.
<p>학교장 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이 위원회 심의 결과 결재
<p>학생 및 보호자 통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결정내용, 결정 이유, 위반 조항 등 - 징계 조치 기간 및 징계 조치 기간에 학생이 해야 할 사항 -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유의 사항, 보호자 협조 사항 등 -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제35조(재심의절차) 위원회의 조치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의 절차에 의해 재심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계	내 용
재심의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음. •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 및 그 보호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이때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안내함
재심의 여부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에서 재심의 여부를 검토·심의
재심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 •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
재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위원회에서 재심의 • 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함 - 위원회에 재심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음 - 재심의 신청시 학생에 대한 위원회의 재심의 결정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
학교장 결재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통지 → 조치 이행

※ 학교단위 이의제기 시 유의할 점

- 징계 대상자 지도 과정, 징계 절차 등의 적법성 검토
-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인격 존중

- 법령 및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선의 기회 부여
- 징계학생 지도를 위한 학교의 교육적 지원 및 조치

제36조(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절차) 징계 재심 결과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구분	내용
행정 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행정 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제37조(종류 및 기간) 징계의 종류 및 기간은 정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교내 봉사 :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총 10시간 이내 범위)
2. 사회 봉사 :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총 25시간 이내 범위)
3. 특별교육 이수 :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한다.
4. 출석 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학생 생활 교육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38조(징계자 교육 방법) 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1. 교내 봉사 - 학생을 등교시켜 출석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생이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 가. 봉사 활동은 방과 후에 실시한다.(화단, 계단, 창틀, 껌 제거 등)
 - 나. 봉사 활동 후 봉사 시간, 장소, 내용, 활동을 작성하여 봉사활동 대장에 기록하며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 다. 징계 대상 학생은 봉사활동 기간 중 매일 봉사일지를 작성토록 하여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라. 봉사활동 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마. 봉사활동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봉사활동이 우수한 학생은 봉사기간 단축 조치를 안전생활부장의 제청으로 학교장이 할 수 있다.
 2. 사회 봉사 -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 가. 담당교사는 사전에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생활 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3. 특별교육이수 -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하며 그곳의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이 교육을 받고 확인서를 받아온다. 확인서가 없을 시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학부모가 반드시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가.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 또는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학내외 특별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치료,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음

나.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

다.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라.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마.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Social worker)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4. 제38조에 해당하는 교육 처분 사실은 학생 교육대장에 기록 관리하며, 추수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5. <삭제>

6. 학교의 장은 제38조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7. 출석정지

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나.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개선을 지원한다.

제39조(징계의 세부 사항)

구분	내 용	징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2.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			
	3. 언행이 불손한 학생	○			
	4.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	○	○	○
	5.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준법	6.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7.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8. 학교 단체행사에 고의적으로 불참한 학생	○	○	○	
	9. 수업준비, 청소, 기타 학생의 의무이행에 대만한 학생	○	○	○	
	10. 생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11.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
	12.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13. 품행이 불량하여 뉘우침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14.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한 학생	○	○	○	○	
수업	15.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	
	16.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17.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18.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	○	
	19. 평가를 거부한 학생	○	○	○	○
	20. 평가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근태	21. 미인정지각, 미인정결과, 미인정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22.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23. 미인정결석이 연속 10일 이상인 학생	○	○	○	○

구분	내 용	징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약물	24.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	○
	25.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26.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
	27. 음주 또는 흡연 사실을 알고 방조한 학생	○	○	○	
퇴폐 행위	28. 도박을 한 학생	○	○	○	○
	29.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
	30.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31. 불량서적 및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
	32. 몸에 문신을 새겨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학생	○	○	○	○
	33.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34.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금품	35.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36. 금품 절취, 강탈, 사취한 학생	○	○	○	○
사이버 예절	37.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38. 등교 후 휴대 전화기를 수업시간에 무단으로 사용한 학생	○	○	○	○
	39. <삭제>	○	○	○	
	40. 정보통신 분야 관련 각종 인터넷 윤리에 대한 저촉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집단 행위	41.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제40조(징계 내용 통보)

1.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교육내용을 통보하고 교육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2. 징계 조치 결과는 공고할 수 없다.

제41조(징계 학생 평가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응시 기간은 징계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2조(징계 경감) 학교장은 교육 만료 전이라도 뉘우침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3조(징계 해제)

1. 사회봉사 이하의 징계 해제는 징계 기간 중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학생생활교육 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되면 해제된 것으로 한다.
2. 특별교육 이수 의무 해제는 교육 이수 후, 뉘우침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해제한다.
3. 징계 해제 학생은 학생생활인권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교직원의 협조)

1. 징계 기간 중의 학생 교육은 담임교사와 안전생활부장 및 전문상담(교)사의 상호 협조로 징계한다.
2. 학생의 사고를 발견 또는 연락을 받은 교직원은 즉시 사유를 담임교사, 안전생활 부장에게 통보하며 담임교사는 해당 학생을 상담(가정 방문 등)하여 사고 내용을 파악한 후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교감 및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3. 학생 생활지도는 안전생활부장 관장 하에 학급담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제 1 차적인 책임은 학급담임에게 있다.

제45조(교육벌) 학생 생활 인권 지도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체벌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금지하며, 도구 및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46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관련 서식)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관련 문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관련 경기도교육청의 활용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제47조(기타)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한 사안의 처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 7 장 용의복장 규정

제48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들의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 착용과 용모 등을 가꾸게 하여 참신한 학생 기풍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9조(두발 및 용모) 두발 및 용모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학생 및 여학생 머리는 자신의 개성을 살려 단정하고 깔끔하게 한다.
2. 몸은 항상 깨끗이 하고 깔끔한 용모를 갖춘다.

제50조(신발 및 양말)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리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1. 실내화는 끈 없는 흰색 운동화를 원칙으로 한다.
2. 실내화는 실내화 주머니에 넣어서 항상 갖고 다닌다.

제51조(소지품)

1. 학생은 교과활동을 위해 허용된 경우 외에는 흉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흡연 관련 물품(담배,ライター 등 화기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음란물,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등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생이 제1항의 물건을 소지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생명·신체 안전을 해하거나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소지품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성의 교사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는 있으나, 본 규정의 4장 20조에 따라 사용한다.
5. 소지품 검사 대상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대상 학생의 동의 없이도 소지물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대상학생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6.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대상 학생을 분리·보호하거나 보호자·경찰 등에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7. 제5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의 행위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8.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한 정기적,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한다.

9. 기타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제52조(흡연학생 특별지도) 흡연 학생은 다음의 사항에 의해 특별 지도 계획을 마련하여 지도한다.

1. 학교 전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흡연이 금지되며 학생들은 교외에서도 흡연을 금한다.
2. 학생이 흡연 및 담배,ライター 등을 소지한 경우 그 경위와 사정을 상황요약서에 작성한다.
3. 흡연 및 관련물을 소지한 학생은 학교 생활 인권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며 아래 단계의 지도과정으로 징계한다.
 - 가. 흡연으로 인한 1차 적발 시 부모님께 사실을 통보하고 훈계 및 주의 조치한다.
 - 나. 흡연으로 인한 2차 적발 시 부모님 내교 및 교내봉사에 처한다.
 - 다. 흡연으로 인한 3차 적발 시 금연교육 입교 및 특별교육 이수에 처한다.
 - 라. 2회 이상의 적발 학생은 외부 상담 기관과 연계하여 일정기간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마. 흡연 이외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이 흡연으로 적발될 시에는 가중 적용할 수 있다.

제 8 장 학생자치와 참여의 권리 규정

제53조(목적)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개정 절차를 거쳐서 학교 공동체의 합의를 통하여 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54조(학교생활인권규정의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

1.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재·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규정개정심의위원으로 참여한다.
2. 올바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위한 인권 바르게 알기 선행 교육을 실시한다.
3. 공동체를 위한 자율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4. 학교공동체(학생, 교사, 학부모)의 합의를 통하여 개정을 추진한다.

제55조(개정절차)

1.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학생회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 검토한다.
2. 창의적 체험활동 및 학급 자치활동을 통한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3. 학생권리의무 인식 및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검토하여 쟁점 토론을 실시한다.
4. 학급회에서 확정된 대표안을 제안하여 전교자치회에서 심의 의결안을 제출한다.

5. 학부모 대표안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최종안을 확정한다.
6. 교사 대표안을 교무회의를 통하여 최종안을 확정한다.
7. 최종 학생안을 교무회의에서 심의를 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 학생자치회 대표와 재차 의견을 조정하여 조정한다.
8. 교무회의에서 심의된 안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제56조(지도계획)

1.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제정된 규정은 엄격히 이행하고 적용한다.
2. 전 교원이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엄중한 조치 및 지도를 한다.
3. 학생회 중심의 자율적 교육 및 규칙 준수 활동을 전개한다.
4. 담임교사를 통해 자율적이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한다.
5. 교원 연수를 통하여 전체 교원이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철저히 숙지하도록 한다.

제57조(홍보방법)

1. 훈화, 학급회, 학생회 등을 활용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2. 학교홈페이지, 학부모회의 등을 이용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한다.
3. 학교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누구나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안내하도록 한다.
4. 홈페이지 사이버 공간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상호 의견에 댓글 달기를 유도한다.
5.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교류의 장으로 활용한다.

제58조(공포 및 적용)

1.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학교장이 공포한다.
2.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전교생에게 안내하고 홍보한다.
3. 개정된 학생생활인권규정을 학교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학부모에게 홍보한다.
4. 개정된 학생생활인권규정을 안내하고 적용하여 엄정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제59조(정책에 참여할 권리)

1.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

야 한다.

제60조(정치에 참여할 권리)

1. 만18세 이상의 학생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만16세 이상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제 9 장 학생자치회 규정

제61조(목적) 본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자치능력의 배양으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명칭) 이회는 선단초등학교 학생자치회라 칭한다.

제63조(회원) 이회의 회원은 본교 학생으로 한다. 다만, 유예중인 경우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제64조(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이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또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급회, 전교학생자치회 그리고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 위원회를 둔다.

제65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그 임기와 회기는 학년도에 준한다. (단,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회장 1명(6학년)
2. 부회장 2명(6학년 1명, 5학년 1명)
3. 각 부의 부장
4. 각 학급의 회장 및 부회장

제66조(부서) 이회는 다음의 각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한다.

1. 인성생활부 : 질서 및 생활태도 등 교풍 확립
2. 환경부 : 교내 환경 조성 및 각종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3. 도서학습부 : 학습활동 및 자율학습활동에 관한 사항
4. 체육부 : 체육 활동 등 심신 단련에 관한 사항

제67조(임원의 자격) 본교 재학생에 있으며,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68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 부장은 부를 통솔하며 부의 운영을 맡고, 차장은 부장을 보좌한다.
4. 임원의 임기는 당선 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 중이라도 징계(교내봉사 이상)를 받은 경우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69조(임원선출)

1. 회장, 부회장은 전교생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거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2. 각 부 부장 및 차장은 학생회장, 부회장의 추천으로 지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임명한다.
3. 후보가 한 명인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60%이상의 득표를 얻은 경우 당선된다.

제70조(입후보자 자격)

1. 근면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어야 한다.
2. 입후보자는 지휘 및 통솔 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입후보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 선거권자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71조(입후보자 선거 유세)

1. 유인물은 지정된 장소 외에는 부착할 수 없다. (단, 유인물은 3개까지로 제한한다.)
2. 유인물은 인성생활부장의 허가를 득한 후에만 부착할 수 있다.
3. 유인물의 내용에는 다른 입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학생 신문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입후보자는 당선이 되어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72조(투표 결과 처리)

1. 최고 득표수를 얻은 입후보자가 회장 및 부회장이 된다.
2. 최고 득표수를 얻은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한다.
3. 단독으로 입후보한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
4. 투표 용지는 학생자치회에서 준비한 용지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용지는 무효로 간주한다.

5. 투표 용지에 2명 이상이 표시된 용지는 무효표로 간주한다.
6. 투표 용지에 입후보자란 이외의 곳에 표시되었거나 구분선에 표시된 것은 무효표로 간주한다.
7. 기타 내용의 투표 용지가 나왔을 때는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정하기로 한다.

제73조(대의원회구성)

1. 대의원회는 회장, 부회장, 각 부장, 각 학급의 반장으로 구성한다.
2. 반장, 부반장은 각 학급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74조(포상) 학생회 임원은 다음의 포상을 할 수 있다.

1. 공로상 : 학생회 임원 중 특별한 공로를 인정받은 학생
2. 봉사상 : 학생회 임원 중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
3. 봉사활동 인정은 연간 10시간 이내로 한다.

제 10 장 규정의 개정

제75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1. 경기도 조례 제4085호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상호 협의를 통한 학생생활인권규정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둔다.
2. ‘학교생활인권규정’ 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 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원위원은 <삭제> 3인과 학부모 위원은 1인, 학생위원은 3인, 전문가(1인)으로 구성한다. 학생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1/3이상인 되도록 구성한다.
4.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76조(의결정족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7조(회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명으로 소집하여야 하며,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8조(규정의 개정)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개정안 발의(제130조) 근거에 의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는 ‘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79조(위원회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0조(위원회 적용 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81조(위원회 운영)

1.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2. 각종 위원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제8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 11 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 규정

제 1 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83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 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 2 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84조(조언)

1.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3.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85조(상담)

1.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3.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4.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6.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가.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는 상담
 - 나.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다. 근무 시간 외의 상담
8.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86조(주의)

1.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

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87조(훈육)

1.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 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5.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6.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가.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

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라.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학생에 대한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생활 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수업 중 돌아다니기, 장난, 잡담, 소음 등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		교실내에서 수업에 참여
2호	수업 중 돌아다니기, 장난, 잡담, 소음 등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실외 교육활동시 학습집단으로 부더의 분리 포함	교실내에서 수업에 참여
3호	가 ①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하거나,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②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③ 긴급한 행동개선 또는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정 장소 (교장실, 1층 구체육자료실) (40분 이내 또는 충분한 자기성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시)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인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쉬는시간, 점심시간 내)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u>학생생활교육위원회</u>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지정 장소 (교장실, 1층 구체육자료실)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지각의 기준 (학교장이 정한 시간. 본교는 09:00까지 등교)			

8.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9.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의 분리에 해당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0.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11.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1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가.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나.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다.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라.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물품 분리 방법]

요건	분리 기간	분리 장소	분리방법
1 제87조제1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 시간	교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교사는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향정신성 의약품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고가의 휴대품, 사치성 장신구, 음란미디어, 도색잡지 등			

13.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14. 학급 담임교사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

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88조(훈계)

1.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3.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 가.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 나. 성찰하는 글쓰기
 - 다.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89조(보상)

1.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90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1.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91조(이의제기)

1.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부 칙 <2023.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폭력규정) 학교내·외 폭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별도 적용을 받는다.

1. <삭제>

제3조(기타 사항) 학생생활지도고시에 따라 규정을 반영한 개정으로 반영 내용과 기존 규정이 상충될 때 고시 내용이 우선한다.